

(별표) 대단위 강의료 지급기준

수강인원	지 급 율
101명 ~ 130명	시간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20%
131명 ~ 160명	시간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35%
161명 ~ 200명	시간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55%
201명 ~ 250명	시간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70%
251명 이상	시간당 전임교원초과강의료 또는 시간강사강의료의 90%